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석유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경추제 6-7골절(탈구), 3) 사지마비(탈구에 대한), 4) 요골골절, 5)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2, 3, 9. 견갑골 골절, 다발성좌상, 경부열창 좌측 3, 4)로 요양증 개호 신청한 경우.

(89-232호 89. 7. 18. 취소)

###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경기 부천시 중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소속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석유

### 주 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1989. 1. 1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일반개호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1. 1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개호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철야 개호를 승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 소속 근로자로서 1987. 11. 11. 작업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뇌좌상, 2) 경주 6-7골절(탈구), 3) 사지마비(탈구에 대한), 4) 요골골절, 5)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2, 3, 9 견갑골 골절, 다발성 좌상, 경부 열창 좌측 3, 4)”로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에서 요양증인자로서 원처분청에 1988. 12. 12.부터 1989. 3. 11. 까지 3개월간 철야개호승인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배뇨, 배변곤란 및 사지마비로 인한 항시 개호인을 필요로 함.”의 소견이나 원처분청 자문의는 “통원치료 중이므로 일반개호 대상임”이라는 소견이어서

철야개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일반 개호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자문한 바 “비록 사지마비라 할지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치료과정이 양호하여 통원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철야개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개호만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의 소견으로서 철야개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사지마비로 인한 배뇨, 배변곤란은 물론이고 음식도 재대로 먹을 수 없으며 빈번한 욕창 발생으로 철야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상태가 철야개호를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6. 7. 김○○)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6. 12.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4. 15. 홍○○)
4. 개호승인 신청서 사본 (1988. 12. 21. 김○○)
5. 주치의 소견서 사본 (1988. 12. 21.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장)
6.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989. 4. 13. 김○○)
7. 소견조회 회신 사본 (1989. 7. 14.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장)
8. 기타.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가 1987. 11. 11. 작업중 피재되어 요양중 1988. 12. 12.부터 1989. 3. 11. 까지 3개월간 철야 개호 신청한데 대하여 원처분청이 일반 개호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데, 청구인의 1988. 12. 21. 자 철야개호신청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통원치료중이므로 일반개호 대상임”의 소견이고 노동부 자문의는 “비록 사지마비라 할지라도 수상

일로 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치료과정이 양호하여 통원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철야개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개호만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의 소견으로 원처분청 자문의와 소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배뇨 배변 곤란 및 사지마비로 인한 항시개호인을 필요로 함”으로서 철야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당 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병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소견조회한 결과 회신된 주치의 소견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소견조회한 결과 회신된 소견을 보면 “제 6, 7경추골절 고정술후 상태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천추부 욕창 발생상태이고 월 2회 승용차 혹은 택시편으로 통원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만 처치, 약재 및 대중치료제를 수령해 가기도 함.”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욕창예방, 배뇨 배변 조력, 체위변경을 위하여 철야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항시 개호인이 필요하고 인정되므로 철야개호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험법에 의한 일반개호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광업소 페이로다 운전기사가 작업중 페이로다 엔진의 고장으로 공장에서 수리하고 돌아오던 중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우측 기저핵부 우측 측내실”이 발생한 경우

(89-222호 89. 6. 19.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강남 밀양시 내이동

원처분청 :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광업소

## 주 문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9. 2. 17.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2. 1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페이로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페이로다의 고장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고장난 페이로다의 엔진

을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삼락동 소재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우측기저핵부 우측 측내실”로 요양증 원처분청에 요양신청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15-20일 정도에 불과하고 발병 당일에도 엔진수리 입회만 하였을 뿐이므로 과로하였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적인 일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페이로다 수리를 위하여 밀양에서 부산까지 수일동안 왕래하였고 혹한의 날씨에도 수리작업장에 입회 대기하면서 극도로 피곤하여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켜 발병하였고 사적인 일로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우측기저핵부 우측 측내실”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9. 5. 31.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6. 2.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4. 19. 오○○)
4. 요양신청서 사본(1989. 1. 김○○)

5. 조사복명서 사본(1989. 2. 17. 행정서기 구○○)
6. 소견서 사본(1989. 1. 9 한미병원장)
7. 소견조회 회신 사본(1989. 2. 8. 한미병원장)
8. 진료 의견서(1989. 5. 1. 영남병원장)
9. 확인서 사본(1989. 1. 25. ○○공업(주)대표김○○)
10. 문답서 사본(하○○, 박○○, 김○○, 장○○)
11. 확인서 사본(1989. 3. 30. ○○ 한약방 이○○)
13.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우측기저핵부 우측 측내실”의 발병을 업무와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하여 평소지병인 고혈압증세를 악화시켜 업무 수행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통상 08:00부터 17:00까지 휴식시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을 월평균 15내지 20일 정도 근무하여 왔고, 발병당시는 다만 밀양과 부산을 왕래하면서 페이로다의 수리 작업을 입회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첫째, 청구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속한 광업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치 아니하여 건강진단개인표에 의하여 고혈압증세 유무를 확인할수 없으나 청구인을 진료한 바 있는 영남병원장 발행 진료의견서상 상병명이 “뇌졸중, 고혈압”이며 우측편마비 및 고혈압으로 치료하였다는 소견이며 경남 밀양군 소재 ○○한약방 대표 이○○은 청구인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8. 4. 10 및 동년 10. 5. 2회에 걸쳐 고혈압 치료제 한약을 제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89. 2. 8.자 한미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에 의하면 “상병명은 자발성뇌실질내 뇌실내출혈, 우측 기저핵부위 및 우측 측내실이며 본 환자

는 여러가지 신경학적 소견으로 미루어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인 것으로 사료됨”인바 이상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자로 고혈압에 의하여 상병명 “자발성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 우측기저핵부위 및 우측 측내실”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88. 12. 25부터 밀양과 부산간을 왕래하면서 페이로다 수리작업을 입회하여 오던 중 재해당일인 1988. 12. 31.에도 09:00경 수리작업장에 도착하여 17:00경까지 입회하였다가 집으로 가던 중 정비공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발병하였는바 원처분청에서는 사적인 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갔다가 발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친구인 장○○은 청구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1989. 1. 24.자 원처분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간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나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갔다 할지라도 정비공장에서 30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며 수리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므로 출장 순로를 이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출장 업무수행중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어진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과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장난 페이로다 엔진을 수리하기 위하여 출장업무 수행중 고혈압으로 뇌졸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부 예규 제92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6조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한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